

울산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1가단1012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고A

소송대리인 B

변론 종결 2021. 10. 26.

판결 선고 2021. 12. 7.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0.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15,031,995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31,99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4. 1. 17. C은행 달동지점으로부터 17,187,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원고와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1	D	14,608,950	2014. 1. 17.	2017. 1. 16.	기업운전할부상환식 일반자금대출	C은행 달동지점
---	---	------------	--------------	--------------	------------------	----------

나. 원고는 2014. 10. 20.경 B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같은 해 12. 17. C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에 따라 C은행에 원금 및 이자 11,527,9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는 2019. 10. 31.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10. 31. 접수 제1616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B가 설정한 근저당권은 모두 말소되었고, 2019. 11. 15.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E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68,8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B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바. 2021. 1. 15. 현재 B에 대한 원고의 구상채권 합계액은 15,031,99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채권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가 되며, B와 피고가 법률상 부부인 점에 비추어 B는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인지 몰랐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러한 추정을 뒤집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취소범위 및 가액배상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2)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마친 직후인 2019. 11. 15.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F조합, G,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하였고, 그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194,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반환만을 구할 수 있다.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32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를 기준으로 한 공동담보가액은 126,000,000원(=이 사건 부동산 시가 320,000,000원 - 말소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합계 194,000,000원)이 되는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는 것인바, 위 공동담보금액 126,000,000원 보다 적은 금액인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5,031,995원이 가액반환 범위가 된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15,031,995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반환으로 15,031,99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형석

별지